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10문 10답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10문 10답

-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함께 해요
- 6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Q1
- 8 여러 개혁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Q2
- 10 개별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Q3
- 12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Q4
- 16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Q5
- 18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다
- 20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Q6
- 22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Q7
- 24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Q8
- 26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Q9
- 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Q1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회에 차별이 있음을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등 또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왜 10년이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정되지 못하는 현실이야말로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알려줘

차별금지법의 단순하리만큼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2007년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추상적 가치가 아닌 구체적 현실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최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룬 첫걸음이었습니니다. 그런데 법안이 세상에 등장하자 수난이 시작됩니다. 차별금지사유 중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이 삭제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차별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밀려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사건은 한국사회에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와 무엇으로 논쟁하고,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계, 재계, 종교계의 반발’은 이후 보수 기독교 세력의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외에도 학생인권조례, 서울

시민인권헌장, 퀴어문화축제, 지역의 인권조례 등을 폐지시키기 위한 실력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실력행사 앞에 정치인들은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결탁해왔습니다. 회피하는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나도 동성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등등의 말들로 자신을 방어하며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에 서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낳는 사회적 효과, 결국 누군가는 차별받아도 된다고 공언하는 효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결탁을 하는 이들의 행보는 더 적나라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목표로 내건 정당이 출마했습니다. 2017년 9월 3일 다수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혐오선동세력의 집회에 참석하여 축사 및 발언을 하였고, 2017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는 동안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어

이 모든 과정은 노골적인 ‘혐오’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레임의 위력은 그 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혐오의 프레임이 확산될수록, 평범한 사람들도 삶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별 의심 없이 혐오를 통해 표출하게 됩니다. **내가 겪는 불운과 부조리함이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소수자들의 존재 때문인 것처럼 느끼게 되지요.** 그 결과는 혐오가 정상화, 정당화되는 사회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와 혐오 프레임의 확산, 무책임한 정치권의 회피 혹은 결탁, 동시에 그에 대한 애끓는 저항들.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취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현실들로 바뀌어 우리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들 사이 어디쯤에서 혼란스럽거나 걱정스럽거나 외면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얼굴들에서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으로 촛불을 들고, 새로운 정권을 만든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촛불 광장 당시,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외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찰을 이어갔습니다. 성차별 발언을 문제 제기하고 성찰하며 “민주주의는 여성혐오와 같이 갈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무대의 수화통역을 보며 비장애인 중심의 집회 문화를 성찰하는 평등의 감각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저마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광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가능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특정 사유에 대한 찬/반의 구도를 넘어 한국 사회에 평등을 선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마찰 면에서 부대끼고 논쟁하고 갱신해나가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평등을 선언하는 시작은, 우리 모두가 차별과 평등에 대한 자기만의 질문을 품는 일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 연대는 그 질문들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수난사

- ◇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연구
- ◇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을 제시하며 국무총리에 법 제정을 권고
- ◇ 2007년 10월 법무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첫 입법 예고
- ◇ 2007년 12월 법무부,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7개의 사유가 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 ◇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결성
- ◇ 2008년 1월 17대 국회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등 차별금지법안 발의
- ◇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양 법안 자동폐기
- ◇ 2011년 1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 ◇ 2011년 9월 18대 국회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 등 11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성적 지향’ 삭제하고 ‘성적 평등’을 포함 (18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
- ◇ 2011년 12월 18대 국회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으로 발의
2012 총선 등의 국면으로 공청회 등 진행되지 못함 (18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
- ◇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 ◇ 2012년 11월 6일 19대 국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 ◇ 2013년 2월 19대 국회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등 51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4월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가 극렬한 반응’을 이유로 자진 철회
- ◇ 2013년 2월 20일 19대 국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등 12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4월 위와 같은 이유로 자진 철회
- ◇ 2017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Q1.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그렇리가요. 하지만 차별금지법도 없이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차별은 뿌리가 깊습니다. 누군가의 편견이나 악의, 몇 가지 잘못된 제도에만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예방과 교육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집단생활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 전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오랜 차별이 있었습니다. 2000년까지 전염병예방법에서 '일시적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도적인 차별은 없을지 모르지만 기숙사 입사를 거부당한다거나 스스로 위축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의 제개정이나 특정한 조치로 차별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편견에서 기인한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들을 알려나갈 필요도 있고 익숙해진 관행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만으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차별금지법도 없이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는 '차별을 알아차리기' 위한 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토론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금지되어야 할 차별행위는 어떤 것인지, 차별을 없애가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등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질문에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길을 여는 법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유니폼을 입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치마를 강요당하거나 할 때 사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차별이라고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욱 많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더욱 잘, 더욱 많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차별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Q2.

여러 개혁 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을 외치다보면 더 시급한 국정과제들이 먼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함’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차별은 하루 하루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30세를 넘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면접에서 탈락될 때,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때, 성소수자들의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이 취소될 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할 때, 이 모든 차별의 순간들이 우리의 매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중에’ 제정되도록 미루어도 괜찮다는 것은, 오늘의 차별은 일어나도 되는 일이며 ‘나중’이 올 때까지 참아도 괜찮은 일이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처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습니다.

또한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는 무슨 뜻일까요? 갈등 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때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일까요.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모든 조항에서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인권은 다수가 허락해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평등은 불평등과 갈등을 빚으며 발전합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여성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과거의 불평등에 도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억압되었던 사람들이 자신도 ‘사람’임을 새로이 주장하면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면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몰랐던 차별을 인식하고 평등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현재의 갈등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 내 원칙을 만들어가며,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미래를 바로 이 갈등 속에서 현재로 앞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저 손놓고 법 제정을 방치해왔습니다. 이 주장의 앞뒤 구절은 반대로 놓여야 합니다 - 인권의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차별금지법은 합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그 속의 한 명 한 명이 일상 속에서 인권과 평등을 성찰하고 실현해내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Q3.

개별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차별은 한 가지의 이유로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차별 또한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은 한 사람이 중첩된 경험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청소년성소수자가 교사에게 아웃팅 협박을 당하는 상황은 성소수자이면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차별은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난민인 장애인, 고령의 여성노동자 등 우리는 여러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 경험의 합으로만 차별을 바라보거나 여러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별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각자가 겪게 되는 고유한 차별 경험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을 여러 요인과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차별이 어떤 경험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연령이나 성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규정하는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별법들은 특정한 차별사유를 구체화하여 심화시켰지만, 개별법만으로는 차별이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가령 장애여성노인이 직장에서 차별당했을 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다룬 연령차별금지법과 장애를 이유로 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의 기로에 서서 내가 겪은 차별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각자 다른 차별시정기구에 진정해야 한다면 너무 힘겹지 않을까요? 복합적인 차별 사유 중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차별이 발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어려우니 논란이 되는 조항은 일단 빼고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는 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삭제했을 때도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법상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조항이므로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좋다. ‘~등에 의한 차별’로 다 포괄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차별금지법을 보면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조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계인권선언도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9개의 차별금지사유만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사유를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권리이므로 그 본질상 차별금지를 따로 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차별금지사유를 점점 더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를 밝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온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이미 존재했던 특정 항목을 삭제하자는 것은, 그 해당사유와 관련된 차별은 계속되어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 셈입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할 자와 차별해도 되는 자를 나누어버린 차별금지법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평등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평등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법에 현재 명시된 차별금지사유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 출신 지역[°] — 출신 국가 — 출신 민족 —
용모 등 신체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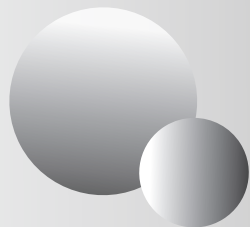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科 —————
성적 性的 지향 — 학력 — 병력 病歷 등**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포스터가 어린이와 여성만 소음의 원인인 것처럼 만들어졌다면 차별적 광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터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풍부하게 차별행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과 전문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권고들을 꽤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 대상 기관이나 법인이 무시하기 일쑤라 차별이 존속됩니다.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 대상을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한정 한 것이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의 결론이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었는데,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가 이미 ‘여자’ 부분은 삭제했던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기간제법, 파견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은 시정명령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다양한 권한과 기능을 가져서 적절한 방식으로 차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더욱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기를 약속하는 것이니까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 _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C/KOR/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_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A/HRC/8/40)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체코)

2009년 _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E/C.12/KOR/CO/3)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된 것에 따라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 위원회의 일반논평 20과 부합하도록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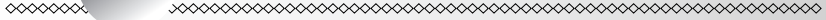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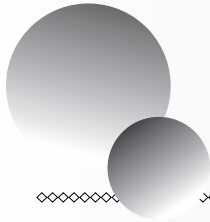
2011년 _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KOR/CO/7)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_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CRC/C/KOR/CO/3-4)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_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C/KOR/15-16)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_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A/HRC/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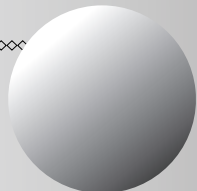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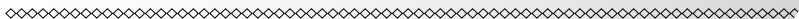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2015년 _ 유엔 자유권위원회 (CCPR/C/KOR/CO/4)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_ 유엔 사회권위원회 (E/C.12/KOR/CO/4)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의 지연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재확인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Q6.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제정된 후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차별을 당했을 때 그냥 서럽고 억울한 경험으로 넘기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당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당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채용 조건을 감수해야 하거나, 머리모양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차별 경험은 공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사적인 경험으로 남기 일쑤였습니다.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고 위로해주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차별 경험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차별의 부당함보다는 '네가 당할 만한 일'로 여기며 귀찮아하고, 차별의 피해자 역시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넘기려고 애쓰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고, 설령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회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차별은 견고하게 이어져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차별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차별 경험을 누군가 겪게 된 불행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Q7.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치 자신의 지위가 위협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차별을 집단 대 집단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남성이 여성을,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이고 누군가의 양보를 요구하는 법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집단 대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차별 진정 중에는 남성들의 진정도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데, 성별 역할분담이 고정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유치원에서 외국인 영어 강사를 모집하는데 ‘Only White’라는 조건을 단 채용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인이 흑인을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은 피부색이나 출신국가, 민족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문제입니다. 차별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차별이 존속하는 한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권리는 파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권리를 누리게 된다고 내가 뭔가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비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이 명시한 교육권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과정이지요. 누군가 겪는 차별이 정당화될 때 또다른 누군가를 향한 차별도 정당화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는 한 사회가 그/녀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차별 경험을 더욱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결국 평등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 동료 시민이 되어가기 위한 소중한 계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Q8.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된다면 불안은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도 하지요. 사실 차별금지법만으로 모든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혐오의 내용을 담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파급력이나 수위, 형태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필요하지요. 여러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혐오선동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과 더 많은 안내 등이 실질적으로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차별에 대한 의식과 감각을 키우고 확장할 수 있도록 풍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혐오선동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선언하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의 자유를 위한 행동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이자,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들릴 권리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이나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이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지요.

혐오표현의 금지는 자유 대 평등의 문제이기보다 자유 대 자유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것과 이슬람교 신자임을 밝히는 것은 같은 무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거리낌없이 말하는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특권일 뿐입니다.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우리의 대항표현도 훨씬 당당하고 자유롭겠지요.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말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혐오표현에 맞서는 데에 대항표현(counterspeech)이 중요합니다. 차별의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악의적인 편견, 부당한 주장 등에 맞설 때 혐오표현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Q9.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냈을 때부터 줄기차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던 세력이 있습니다. 당시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학력,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문제삼으며 반대했고 결국 이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됩니다. 그 후로도 18대, 19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제정이 좌절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호도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설교만 해도 목사가 벌금을 내게 된다,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HIV/AIDS가 확산되어 세금이 낭비될 것이다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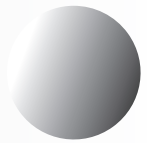
이들이 합리적 토론의 영역에는 발 들이기 어려운 편견과 왜곡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소수자를 가장 쉽고 편리한 혐오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득권을 지키려고 특정한 집단을 타자화하고 자신들의 명분을 만드는 행태는 전세계적인 ‘혐오의 정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이나 이주민 등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에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속 밝혀졌듯이, 일부 극우 단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마저 이들의 혐오 대상이 되었던 현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혐오가 방치될 때,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든 모든 사람의 존엄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혐오선동세력에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을 만난다면 다음의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 ◇ 이들은 조직된 신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만난 자리에서 설득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가진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 중 간명하게 교정해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이 아닙니다. 반박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장을 더 많이 말하세요. 이들의 주장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대신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 ◇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없다는 점과 함께요.



Q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실천하는 연대체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함께 하려는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2011년 1월 출범하여 여러 활동을 벌였지만 입법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는 동안 혐오선동세력은 점차 기승을 부리며 활개치는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씨앗은 숨을 유지하는 것만도 힘겨웠으니까요. 그러나 평등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으며 광장에서 촛불로 함께 만났고,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23일 재출범하면서 차제연은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선언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평일 낮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오프라인 서명캠페인은 전국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공감대를 높이며 넓고 깊게 뻗어나가기 위한 전국 간담회, 내부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소속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제연에는 현재까지 114개 시민사회단체(2017.10.20. 기준)가 함께 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속단체들이 모두 모여 운동의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토론하는 전체회의가 한두달에 한 번 꼴로 열리고, 그외 캠페인, 간담회 등의 활동이 팀별로 이루어지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점검됩니다. 가입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제연 소속단체로 함께 하시길 원하면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가입신청양식을 포함한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이렇게 함께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평일 오전 11시 반부터 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에서 서명캠페인을 직접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여러 파일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서명 캠페인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bit.ly/차별금지법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신청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나요? 차별금지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나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토론하고 싶나요? 반인권혐오세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되나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차제연이 갑니다. 간담회 신청 및 문의는 차제연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차제연 소식에 귀 기울이고 차별금지법을 널리 알려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NS를 통해 차제연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확인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주간 평등 업’ 등 다양한 소식이 게시됩니다. 차제연에 궁금한 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도 많이 말해주세요. 차제연이 주최하는 여러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특히 12월 9일 오후에 열리는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_equalact2017@gmail.com](mailto: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_facebook.com/equalact2017](https://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_@equalact2017](https://twitter.com/equalact2017)

홈페이지 [_ad-act.tistory.com](http://ad-act.tistory.com)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귀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템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대인권행동 이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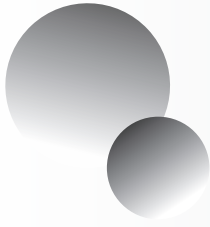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B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홀리스행동



차별금지법

—

지금 당장



